

신 구 대 비 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7조(과정기간) ① 본 과정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연2회에 걸쳐 과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: 2017.3.1.)</p> <p>1. 봄 학기 과정 : 3월 1일 ~ 8월 31일 2. 가을 학기 과정 : 9월 1일 ~ 익년 2월 말일</p> <p>② 생략</p>	<p>제7조(과정기간) ① 본 과정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1. 1 학기 과정 : 3월 1일 ~ 8월 31일 2. 2 학기 과정 : 9월 1일 ~ 익년 2월 말일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	- 운영기간 변경 및 내용 조정
<p>제 10조(입학자격) ①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</p> <p>1. 관공서 사무관급 이상, 대기업 및 대학 교직원 부장급 이상, 중소기업의 임원급 이상, 군경의 경우 고급 간부급 이상 2. 기타 변호사, 의사, 변리사, 공인회계, 노무사 등 사회지도층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자</p> <p>② 생략</p>	<p>제 10조(입학자격) ①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</p> <p>1. 관공서 사무관급 이상, 대기업 및 대학 교직원 부장급 이상, 중소기업의 임원급 이상, 군경의 경우 고급 간부급 이상 2. 기타 변호사, 의사, 변리사, 공인회계, 노무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자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	- 사회지도층 <인사>라는 기준 삽입으로, 정확한 자격 기준 부여
<p>제 11조(지원절차) ① 본 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기일 내에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입학지원서(소정양식) 2.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. 기타 필요한 서류</p> <p>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</p>	<p>제 11조(지원절차) ① 본 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입학지원서(소정양식) 2.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. 기타 필요한 서류</p> <p>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.</p>	- 서류제출 시기와 전형료 제출 시기가 상이하므로 전형료 삭제
<p>제 13조(입학정원) 본 과정의 입학정원은 연 40명 내외로 하되, 봄 학기와 가을 학기에 <u>기수별로 각 20명 내외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u> 다만 운영위원회 의결시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다.</p>	<p>제 13조(입학정원) 본 과정의 입학정원은 연 40명 내외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 의결시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다.</p>	- 인원 내용 조정 및 일부 내용 삭제 - 연 1회 신입생 모집으로 변경하여, 학기 운영의 효율성 증대
<p>제 14조(등록금) ① 생략</p> <p>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가. 국회의원, 지역 주요 기관장 : 면제 나. 공무원 :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면제 또는 일부 감면 다. 여성 입학자 : 20% 감면 라.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포항공과대학교 교직원 : 50% 감면</p> <p>③ 생략</p>	<p>제 14조(등록금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 CEO의 경우에는 우대 정책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③ 현행과 같음</p>	- 최고위과정 특성상의 공무원 대상 특혜 차단
<p>제17조(과제제출) 수강자는 매 학기별 학기가 끝나면 다음 학기(수료)전 까지 수강한 내용을 중심으로 Report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.</p>	<p>제17조(과제제출) 수강자는 수료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수강한 내용을 중심으로 1편의 Report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.</p>	- 1년 과정 수강 종료 후, 전 내용을 바탕으로 report 제출이 더 효율적임을 판단

<p>제19조(수료식) 수료식은 제15조 각 호를 충족한 수강자를 대상으로 봄 학기 및 가을 학기 수료생 모두 매년 포항공과대학교 학위수여식 하루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19조(수료식) 수료식은 제 15조를 충족한 수강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상세 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<p>- 교내 수료식 일자와 최고 경영자과정 수료식 일정이 중복되어, 교내 참석자의 혼동을 피하고자 일정 변경</p>
<p>제 26조(포상) 수강자 및 수료자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및 포상 내용은 따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성적우수상 2. 논문상 3. 개근상 4. 공로상 	<p>제 26조(포상) 수강자 및 수료자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및 포상 내용은 따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성적우수상 2. 삭제 3. 개근상 4. 공로상 	<p>- report는 수료 조건 대상으로만 제출하여, 포상의 기준에서 제외함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 	